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80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 박찬대·노종면·유동수

이훈기 • 허종식 • 모경종

맹성규 · 김교흥 · 임호선

김용만 · 진선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조선·무역 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 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 00억원 규모로 추산됨. 또한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만도시인 인천과 부산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174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를 "8종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법원"을 각 "해사국제상사법원·지방법원"으로 한다.

3의2. 해사국제상사법원

제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는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특허법원"을 각각 "특허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회생법원 합의부"를 "회생법원 합의부,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로 한다.

제3편에 제2장의2(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해사국제상사법원

- 제28조의5(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
 -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8조의6(부)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8조의7(심판권)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제5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 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 나.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항해, 선박채권 또는 그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2.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 가. 해사항고소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이하 "해사행정청"이라 하며, 해사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나. 해사당사자소송: 해사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 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다만,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경 찰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한다.

- 1. 당사자 중 한쪽 혹은 양쪽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닐 것
- 2.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일 것
- 3. 당사자들이 본 법원에 소 제기를 합의한 사건
-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를 준용한다.
- ④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단독판사의 판결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⑤ 해사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 제28조의8(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제28조의7에 규정된 해사 사건과 관련되는 소송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 할 수 있다.
 - 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른 법원으로부터 관련청구소송이 이송되어 온 경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음의 <u>7종류</u> 로 한다.	<u>8종류</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해사국제상사법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u>지방</u>	③ <u>해사</u>
<u>법원</u> ·가정법원·행정법원·회	<u>국제상사법원·지방법원</u>
생법원과 <u>지방법원</u> 및 가정법	<u>해사국제상사법원 •</u>
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	<u>지방법원</u>
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	
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	
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판사) ① (생 략)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법원·특허법원· <u>지방</u>	②
<u>법원</u> ·가정법원·행정법원 및	<u>국제상사법원·지방법원</u>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제6조(직무대리) ①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 특허법원 • <u>지방법원</u> • 가정법	해사국제상사법원
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u>• 지방법원</u>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② (생략)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⑤ (생략)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
• 특허법원•<u>지방법원</u>•가정법
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생 략)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저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①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특허법원·해사</u>
국제상사법원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
에 관하여는 제4항, 제5항을 준
용한다. 다만, 제28조의7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u>해사국제상사법원·</u>
지방법원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특허법원·해사

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 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 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 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 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 (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 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 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 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 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 사관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u> 국제상사법원</u>
② (현행과 같음)
③특허법원 및 해
사국제상사법원
④ (현행과 같음)
네14조(심판권)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 판한다.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u>특</u>
 <u>허법원</u>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 건
-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 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 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생 략)
-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 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 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 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 한다.
 -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합의부, <u>회생법원 합의부</u>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 3. (생략)

<신 설>

<신 설>

1 <u>특</u>
허법원 · 해사국제상사법원
2
<u>특허법원·해사국제상</u>
사법원
3. (현행과 같음)
제28조(심판권)
1
<u>회생법원 합의부, 해</u>
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2. · 3.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해사국제상사법원
제28조의5(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
제상사법원장을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
로 보한다.

<신 설>

<신 설>

-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 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 다.
-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8조의6(부) ① 해사국제상사법 원에 부(部)를 둔다.
 -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8조의7(심판권) ① 해사국제상 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

 절 및 제5편의 규정이 적
 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
 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
 건을 포함한다)
 - <u>나. 「선원법」의 규정이 적</u> <u>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u> 건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건조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항해, 선박채권 또는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 권,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사건

2.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가. 해사항고소송: 해양수산
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이하 "해사행정청"이라
하며, 해사행정청에는 법
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
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
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
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나. 해사당사자소송: 해사행 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 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

 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

 건
-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상 사사건을 심판한다.
- 1. 당사자 중 한쪽 혹은 양쪽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 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이 아닐 것
- 2.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일<u>것</u>
- 3. 당사자들이 본 법원에 소 제 기를 합의한 사건
-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 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를 준용한 다.
- ④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신 설>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 판한다.

⑤ 해사행정소송은 「행정소송 법」을 준용하되, 「행정소송 법」상 "행정법원"은 "해사국 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제28조의8(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제28조의7에 규정 된 해사사건과 관련되는 소송 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 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 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 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 런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 하여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 로 이송할 수 있다.

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른 법원으로부터 관련청구소 송이 이송되어 온 경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